

# 2026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원계획 공고

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·운용조례 제13조(용자계획의 공고)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2일

## 광 주 광 역 시 장

### 1. 사업목적

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

### 2. 용자에산액 : 300백만원

### 3. 용자대상자

- 용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(허가,등록)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·확충 하려는 자
  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
  - 단란·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
-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·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
-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
-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·확충 하려는 자
  -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/ 단,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
-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(기금사업)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·보수를 하려는 자

### 4. 용자 우선대상 선정지원

- 영업장 면적 100㎡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
- 우수·모범업소,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지정 또는 준비업소
-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

## 5. 용자사업 종류 및 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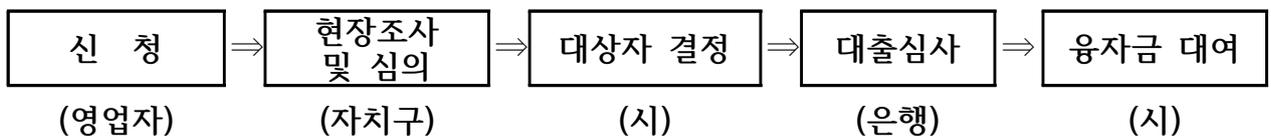
- 시설개선자금 : 영업장,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
- 육성자금 : 모범업소·위생등급 지정업소·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
- 한도액 및 상환조건

용자종류 및 대상		한도액	용자 이율	상환조건
시설 개선 자금	식품제조·가공업	5천만원	연 1%	5천만원 미만 :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 :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
	식품제조·가공업 이외의 업종	3천만원	연 1%	
	화장실,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	1천만원	연 1%	
	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	1억원	연 1%	
육성 자금	모범업소,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	1천만원	연 1%	

\* 용자이율은 위탁 금융기관 수수료(1%)

## 6. 용자업무 처리절차

- 신청기간 : 연중
- 신청장소 :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(식품위생부서)
  - 용자받을 은행(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)에 용자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(신청서에 은행 상담확인 서명)
- 신청서류
  -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【별지 제1호】및 사업계획서【별지 제2호】1부.
  -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【별지 제3호】1부.
  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【별지 제4호】 1부.
 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  - 영업허가(신고증) 사본 1부.
  -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
- 용자방법 : 담보 또는 신용대출
- 처리절차



## 7. 용자 제한 대상

- 기금 용자 신청 시 용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
- 휴·폐업중인 영업자
-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(과징금 포함)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
- 先 시설개선 후 용자금 신청 영업자
- 단란·유흥주점 영업자(단, 주방 및 화장실개선자금은 가능)
- 최근 3년 이내에 용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
- 동일 사업장 주소 내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

## 8. 용자금 환수 등

- 용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용자를 받은 경우
- 원리금의 상환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
-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, 영업자지위승계(단,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) 또는 허가·신고가 취소된 경우
- 모범업소가 육성자금을 용자받은 후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
- 용자 받은 후 3월 이내에 용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(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외)
- HACCP 지정준비업소의 경우 자금을 용자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「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」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## 9. 용자금 상환 방법 :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.

- 수탁 금융기관 : 시금고(광주은행, 농협은행)

## 10. 문의처 :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김수민 (☎062-613-4363) 및 각 구청 위생과

·동구청 608-2453 ·서구청 360-7238 ·남구청 607-4411 ·북구청 410-6699 ·광산구 960-8783





-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용자사업-  
**개인정보 등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서**

수집·이용목적 :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용자사업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.

수집항목 : 성명, 주민번호 생년월일, 이메일, 주소, 전화번호, 제출자료 등

이용범위 : 식품진흥기금 용자사업과 관련된 부분 한정

보유 및 이용기간 : 해당 사업의 용자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,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
※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,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까?     동의함     동의하지 않음

개인정보처리 위탁 :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,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,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까?     동의함     동의하지 않음

개인정보 제3자 제공 :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용자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(정책 수립, 집행, 결과 확인, 만족도 조사 등) 필요한 경우에 한해, 다른 부서 및 지자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,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까?     동의함     동의하지 않음

2026년    월    일

동 의 자(신청인) 성 명 : \_\_\_\_\_ (인)

**광주광역시장 귀하**

##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목적

-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

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, 개업일·휴업일·폐업일,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

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
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동의 효력기간

-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
  - \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-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
  - \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기업명 ○○○

대표자 ○○○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